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037
----------	------

제출년월일 : 2025년 8월 11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환경분쟁 조정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가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이관되어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환경보건위원회 당연직 위원 직위 소멸로 인해 표현을 변경하는 등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강영향조사의 청원 삭제, 연관 조문 현행화

(안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9조)

나. 위원회 당연직 위원 변경 (안 제20조제3항제2호)

다. 법규 관계를 고려한 인용 방식 간소화(안 제2조, 제4조, 제6~7조)

라. 위원의 해촉 조문 현행화 (안 제23조)

마. 인용 조문 현행화(안 제17조, 제28조, 제30조)

바. 위원회 존속기한 명시(안 제26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환경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 (1) 창의규제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개선 의견 있음(일부반영)
 - 의견내용: 위원의 결격사유 규정 유지, 공무원 의제 및 이의제기 규정 신설
 - 반영사항: 위원의 결격사유 규정 유지(안 제22조제1항), 이외에는 상위법에서 위임한 바 없으므로 미반영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 의견 있음(반영)
 - 의견내용: 위원회 구성할 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
 - 반영사항: 성별 고려하여 위원회 구성하도록 조문 수정(안 제20조제1항)
- (5) 규제개선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 (2024. 8. 8. ~ 8. 28.) 결과: 의견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이진숙 (☎2133-7680)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를 “「환경보건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알권리”란 시민이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자신과 가족, 이웃 및 동료의 건강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할 목적으로 위험상태를 확인하거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스스로 결정할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이해하며 의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4조의 제목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보건과 화학물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제3항 중 “시와”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종합계획“”을 ““종합계획””으로 하고 “서울특별시의 특성을 검토하여 5년마다”를 “시의 특성을 검토하여 법 제6조의2에 따라”로, ““지역계획“으로 한다)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를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법 제7조제3항에 따라”를 “시의 환경계획 수립 시”로, “시의 환경계획에 포함시켜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로 한다.

제11조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 또는 제12조”를 각각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를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의2”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및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또는 제12조”를 각각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제1항또는 제12조”를 “제1항”으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항 중 “법 제15조제1항·제2항 및 법 제17조”를 “법 제1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6조제3항 중 “법 24조”를 “법 제24조”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제24조”를 “제28조”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를 “위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위원회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관리계획”을 “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한다”를 “위촉한다.”로, 같은 항 제1호 중 “종사자, 법률 지식을 갖춘 사람”을 “종사자 또는 법률 전문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민건강국장, 환경기획관”을 “시 시민건강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 기후환경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간사1명”을 “간사 1명”으로, “부서장으로 하며 서기는 담당 팀장이 된다”를 “부서장이 맡고 서기는 담당 팀장이 맡는다”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2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에 따라 회의록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30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관리계획”을 “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2조”를 “제16조”로 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중 “법 제24조의2”를 “법 제24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5조제3항”을 “제29조제3항”으로 한다.

조례 제6761호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보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보	제1조(목적) ----- 「환경보	제1조(목적) ----- 「환경보	제1조(목적) ----- 「환경보
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건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건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건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서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	서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이 시민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이 시민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
영향과 피해를 조사·규명하여	영향과 피해를 조사·규명하여	-----	-----	-----
예방·저감 대책을 마련하고,	예방·저감 대책을 마련하고,	-----	-----	-----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른 시민의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른 시민의	-----	-----	-----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환경오염과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환경오염과	-----	-----	-----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	-----	-----
생태계를 보호·유지하는 것을	생태계를 보호·유지하는 것을	-----	-----	-----
목적으로 한다.	목적으로 한다.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알권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알권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알권
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리”란 시민이 환경유해인자로	리”란 시민이 환경유해인자로	리”란 시민이 환경유해인자로
같다.	같다.	부터 자신과 가족, 이웃 및 동료	부터 자신과 가족, 이웃 및 동료	부터 자신과 가족, 이웃 및 동료
1. “환경보건“이란 「환경보건	1. “환경보건“이란 「환경보건	의 건강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	의 건강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	의 건강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	할 목적으로 위험 상태를 확인	할 목적으로 위험 상태를 확인	할 목적으로 위험 상태를 확인
조제1호에 따라 환경오염과	조제1호에 따라 환경오염과	하거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하거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하거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 등(이하 “환경	유해화학물질 등(이하 “환경	필요한 조치를 스스로 결정할	필요한 조치를 스스로 결정할	필요한 조치를 스스로 결정할
유해인자“라 한다)이 사람의	유해인자“라 한다)이 사람의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이해하며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이해하며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이해하며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의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의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의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조사·평가하고 이를 예방	조사·평가하고 이를 예방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환경성질환”이란 역학조사	2. “환경성질환”이란 역학조사			
(疫學調査) 등을 통하여 환경	(疫學調査) 등을 통하여 환경			

유해 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질환을 말한다.

3. “위해성평가”란 환경유해인자가 사람의 건강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위하여 환경유해인자에의 노출과 환경유해인자의 독성(毒性) 정보를 체계적으로 검토·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역학조사”란 특정 인구집단이나 특정 지역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질환과 사망 등 건강피해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환경유해인자와 질환 사이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5. “환경매체”란 환경유해인자를 수용체(受容體)에 전달하는 대기, 물, 토양 등을 말한다.

6. “수용체”란 환경매체를 통하

여 전달되는 환경유해인자에 따라 영향을 받는 사람과 동식물을 포함한 생태계를 말한다.

7. “사고대비물질”이란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8. “알권리”란 시민이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자신과 가족, 이웃 및 동료의 건강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할 목적으로 위험상태를 확인하거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스스로 결정할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이해하며 의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① 「환경보건법」, 「화학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보건과 화학물질에 관하여 다른

물질관리법」 및 그 밖의 환경
보건과 화학물질에 관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
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안전과 보
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
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② (생
략)

③ 사업자는 환경오염 및 화학
사고의 예방 및 체계적 대응을
위한 시와 자치구의 시책에 적
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 시행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
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환경보건종합계획(이하 “종합
계획”이라 한다)의 효과적인 실
행과 환경오염 및 화학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
대응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 특
성을 검토하여 5년마다 서울특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환
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
다) 제3조에 따라 「산업안전보
건법」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
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② (현
행과 같음)

③ -----

---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
다)와 -----
---.

제7조(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 시행 등) ① -----

----- “종합
계획”-----

----- 시의
특성을 검토하여 법 제6조의2에

별시 지역환경보건계획(이하
“지역계획“으로 한다)이라 한
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④ 법 제6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지역계획의 사업 시행에 드
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범
위에서 사업비를 변경하는 경
우

2. 계산착오, 오기, 누락이나 이
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
정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⑤ ~ ⑧ (생 략)

⑨ 시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
라 지역계획의 주요 내용을 시
의 환경계획에 포함시켜야 한
다.

제11조(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역
학조사 및 결과조치) ① ~ ④
(생 략)

⑤ 시장은 제1항 또는 제12조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

따라 -----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

②·③ (현행과 같음)

<삭 제>

⑤ ~ ⑧ (현행과 같음)

⑨ ----- 시의 환경계획 수립
시 ----- 반영
하도록 노력하여야 --.

제11조(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역
학조사 및 결과조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제1항-----

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법 제14조제4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시장은 제1항 또는 제12조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영향조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⑦ 시장이 실시하는 제1항 또는 제12조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지원 요청할 수 있다.

⑧ 환경유해인자 관련사업자(제1항 또는 제12조에 따른 조사의 원인이 되는 환경유해인자의 발생과 관련이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시장이 제1항 또는 제12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⑥ ----- 제1항-----
----- 「환경보건
법 시행령」 제13조의2-----

-----.

⑦ ----- 제1항-----

-----.

⑧ ----- 제1항-----

----- 제1항-----

-----.

1. ~ 3. (생략)

⑨ 누구든지(환경유해인자 관련 사업자는 제외한다) 시장이 제1항또는 제12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짓 진술 또는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건강영향조사의 청원) ①

시민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청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다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관할 지역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청원을 처리한다.

1.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걸친 조사가 필요한 경

1. ~ 3. (현행과 같음)

⑨ -----
----- 제1
항-----

-----.

<삭 제>

우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경

우

3.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의 허
가 등을 받아 설치·운영되는
사업장이 조사 대상인 경우

4. 시장의 청원 처리가 불충분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조사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제
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

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영
향조사의 청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의 처리
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를
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도 불구하고 긴급히 조사할 필
요가 있으면 지역위원회의 심의
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청원

을 심의할 때 해당 청원의 내용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심
의할 수 있다.

1.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
한 이익을 뚜렷이 해칠 우려
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서 비밀 또는 비
공개로 규정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청원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은 「청원법」
에 따른다.

제14조(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시장은 법 제14조, 법 제15조
제1항·제2항 및 법 제17조에
따른 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
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③ (생략)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대책의
수립·이행에 필요한 경우 해당
환경부장관에게 재정적·기술
적 지원을 요청 할 수 있다.

제14조(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 법 제15조
제2항-----

-----.

②·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6조(어린이활동공간 및 어린이
용품 관리) ①·② (생 략)

③ 시장은 제2항 및 법 24조에
따라 어린이 용품에 함유되어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환경유해인자의 종류 및 유해성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시
민에게 알릴 수 있다.

제17조(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중
합정보센터) ① 시장은 제24조
에서 정한 정보, 그 외의 환경유
해인자에 대한 정보의 수집과
생산 및 시민 교육·홍보 등을
위해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중
합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
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9조(환경보건위원회의 설치 목
적 및 기능) 시장은 환경보건정
책의 개발과정에 시민참여를 보
장하고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하
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
문한다.

1. 제7조의 관리계획의 수립 및

제16조(어린이활동공간 및 어린이
용품 관리) ①·② (현행과 같
음)

③ ----- 법 제24조--

-----.

제17조(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중
합정보센터) ① ---- 제28조--

-----.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환경보건위원회의 설치 목
적 및 기능) -----

위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위원회를
둔다.

1. ----- 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2. (생략)

3. 제12조 청원에 관한 사항

4. ~ 11. (생략)

제2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략)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위촉 위원 : 서울특별시의회의원, 환경보건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환경보건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환경보건 관련 산업계 종사자, 법률 지식을 갖춘 사람

2. 당연직 위원 : 시민건강국장, 환경기획관

④ (생략)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2. (현행과 같음)

<삭 제>

4. ~ 11. (현행과 같음)

제20조(위원회의 구성) ① -----

-----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
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 위촉한다.

1. -----

----- 종사자 또는 법률
전문가

2. ----- 시 시민건강업
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 기후
환경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

④ (현행과 같음)

⑤ -----

간사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의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부
서장으로 하며 서기는 담당팀장
이 된다.

제23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
제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
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5. 제1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
는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합
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
한 경우

제24조(회의) ①·② (생략)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
치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
다.

<신설>

제28조(화학물질 등 정보공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시

간사 1명-----
----- 부
서장이 맡고 서기는 담당 팀장
이 맡는다.

제2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서
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24조(회의) ①·② (현행과 같
음)

③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
례」 제10조의2에 따라 회의록
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의2(존속기한) 위원회의 존
속기한은 2030년 8월 31일까지
로 한다.

제28조(화학물질 등 정보공개) ①

민에게 공개한다.

1. 제7조에 따른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관리계획에 대한 정보

2. (생략)

3. 제12조의 어린이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4. ~ 8. (생략)

② (생략)

제30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연구기관, 단체 및 자치구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유해인자의 어린이 용도로의 사용·판매를 줄이기 위하여 법 제24조의2에 의한 자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사업자

2. (생략)

② (생략)

③ 시장은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관련 환경·안전교육 등을 위해 제25조제3항에서 정한 교육기관, 민간단체, 그 밖의 관계

-----.

1. ----- 계획-----

2. (현행과 같음)

3. 제16조-----

4.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

1. -----

-- 법 제24조의3-----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제29조제3항-----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u>조례 제6761호</u> <u>부칙 제2조(위원회의 존속기한)</u> <u>제16조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기 한은 5년으로 한다.</u>	----- ----- -----. <u><삭 제></u>
--	---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업무 변동사항 반영(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삭제), 시 환경보건위원회 당연직 위원 변경,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별도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

4. 작성자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이진숙 (☎ 2133-7680)